

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
번호

2020 - 78

제출일자 : 2020. 8. 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건립한 거창약초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현황

- 시 설 명 : 거창약초유통센터
- 위 치 : 거창읍 대평리 거함대로 3372
- 시설현황 : 부지 3,444m², 시설 1,243m²
 - 세부시설 : 판매장 118m², 집하장 및 창고 900m², 전처리시설 225m²

나. 위탁사무

- 시설 유지관리 : 약초유통센터 토지·건물과 기계 장비 유지관리
- 운영 관리 : 약초의 집하, 보관, 선별, 전처리, 소분, 저장, 판매 등

다. 그간 추진사항

- 2015년도 : 거함산 향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
- 2016년도 : 기본·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준공, 공사 계약
- 2017년도 : 거창약초유통센터 착공 및 준공
- 2018. 7. :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
- 2018. 11.~12. : 입찰공고 3회 / 단독응모로 유찰
- 2019. : 약초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, 시설 보완 등
- 2020. : 약초 관계자 간담회 및 의견수렴, 위탁운영 보완계획 수립

라. 운영계획

- 위탁기간 : 2021. 1. ~ 2023. 12.(3년간)
- 위탁범위
 - 시설 유지관리 : 약초유통센터 토지·건물과 기계 장비 유지관리
 - 운영 관리 : 약초의 집하, 보관, 선별, 전처리, 소분, 저장, 판매 등
 - 집하장·전처리장과 판매장 분리 위탁
- 수탁자 선정
 - 수탁자격 : 거창군 관내 약초생산자 단체·법인,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
 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/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

마. 소요예산 : 없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17조
- 「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4조

나. 향후계획

- 2020. 9월 : 민간위탁운영 군의회 동의
- 2020. 10월 : 입찰공고
- 2020. 11월 : 적격자 선정(민간위탁심의위원회)
- 2020. 12월 : 협상 및 협약 체결, 공증, 인계·인수, 고시
- 2021. 1월~ : 수탁자(단체) 위탁운영실시

관 계 법 령(요약)

□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(개정 2013.6.12)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**군의회**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(개정 및 후단신설 2013.6.12)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.(전문개정2013.6.12)

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(개정 2013.6.12)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

제1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「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 따른다.
1. 재산의 표시, 사용, 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
 2.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성명 및 주소
 3. 관리위탁 기간
 4. 위탁료?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 5.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,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(2014.10.01)
-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? 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,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.(항전부개정 2014.10.01 2015.12.10.)
-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(2014.10.01. 2015.12.10.)
-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(2014.10.01)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.

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4조(약초센터의 위탁)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약초센터의 관리·운영을 약초생산자 관련 단체·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조신설 2018.1.31.>